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89

발의연월일: 2005. 4. 21.

발 의 자 : 안명옥ㆍ김재경ㆍ이윤성

권오을 • 이해봉 • 고진화

전여옥 · 고경화 · 박재완

김애실 · 맹형규 · 조경태

최재성 · 정병국 · 문학진

유승민 · 신중식 · 서혜석

엄호성 · 임태희 · 배일도

이인기 • 유정복 • 이계진

이주호 의원(25인)

제안이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는 일본 제국주의가 개입하여 아시아의 여성을 조직적으로 강제연행·납치하여 일본군의 성노예로 만든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 수 없는 잔악한 범죄행위임. 이와 같은 인권유린 범죄 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진상을 규명함과 동시에 올바른 역사교육 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그러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국 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은 여전히 지원 및 범위 등에 대한 법 적 근거의 미비와 정부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육체적·정신적 고통과함께 어려운 경제적 처지에 놓인 채 살아가고 있음. 특히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고통과 처지는 더 없이 열악한 반면, 이들에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임. 따라서 국가의 지원대상 범위에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지 못한 채 어렵게 살아가는 국외거주일본군위안부 피해자까지 포함시키고자 함. 나아가 주변 피해국들과연대하여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또한 국가가 이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해 진상규명·배상·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명시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하며, 적용대상자를 일제에 의하여 강제연행되어 현지에서 귀환하지 못한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로 확대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 나.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내용에서 간병인 지원을 추가함(안 제4조).
- 다.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마. 국가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배상·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5조). 법률 제 호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 한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일본군위안부에 관한"을 "일본군위안부의 명예회복과 진상 규명을 위한"으로, "생활안정"을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일본군위안부"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 함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대한민국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 채 외국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다.

4. 간병인 지원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기 이를 부담하며, 간병인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항 중 "수행할 수 있다"를 "수행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한다.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생활안 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국가의 의무) ①국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진상규명·배상·올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본군위안 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 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			
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	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u>법률</u>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에 의하여	제1조(목적)			
강제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				
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ㆍ지				
원하고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기	일본군위안부의 명예회			
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과 진상규명을 위한			
생활안정을 기하고 국민의 올바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기				
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u>일본군위안부</u> "라 함은 일제	1. " <u>일본군위안부 피해자</u> "			
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성적학				
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				
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3.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			

第4條(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第4條(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내용) ①국가는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各號의 지 원을 행한다.

1. ~ 3. (생략)

<신 설>

②·③ (생 략)

<신 설>

|第6條(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第6條(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 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① 다음 사항을 審議하기 위하여 女 性部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 안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u> 자"라</u>	함은	일본:	군 위	안부	피해
<u>자 중</u>	대한도	민국 =	구적회	복을	하지
못한 _	채 외	국에	거주	하는	자를
말한다	- <u>.</u>				

지원의 내용) ①-----

- 1. ~ 3. (현행과 같음)
- 4. 간병인 지원
- ②·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간 병인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 가가 이를 부담하며, 간병인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지원및기념사업심의위원회) ①

를 둔다.

1. ~ 3. (생략)

<신 설>

5. (생략)

제11조(기념사업 등) ①국가와 지 제11조(기념사업 등) ①----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와 관 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 3. (생 략)

<신 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에 부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 대되는 사업

② (생략)

<신 설>

- 1. ~ 3. (현행과 같음)
- 4. 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 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수행하

여야 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 대되는 사업
-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국외거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지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외거주 일본 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하여 필요 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지원에 관한 사

<u><신</u>설>

항은 국적회복 및 고국방문, 생 활안정지원 등을 포함하여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가의 의무) ①국가는 일
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명예 회복과 인권증진
을 위하여 진상규명·배상·올
바른 역사교육 등에 대해 노력하
여야 한다.

②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일본군 위안부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 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 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u>예 산 명</u>세 서

- 1. 총 소요예산 추계액 : 연간 10억원
- 2. 연간 운영예산 추계 세부내역
 - 간병인 지원 소요예산 (예산액)
 - 118명×60%×500천원×12개월 = 4억2천만원
 - ※ '04년 생활실태조사에 의거 국내거주 피해자의 60%를 간병인 수요자로 산정
 - 국외거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소요예산(예상액)
 - 국적회복예상자 10명
 - 일시금 : 43,000천원×10명 = 4억3천만원
 - 월지원금 : 700천원×10명×8개월 = 5천6백만원
 - 국외거주 피해자 실태조사 및 국적회복 지원사업: 4천만원
 -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 5천만원